

#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 
번호 114

제출년월일 : 2015. 9. 23.  
제 출 자 : 서대문구청장

## 1. 개정이유

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조제5항이 신설됨에 따라 신설 내용인 『가축사육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의 절차·방법 등』을 조례에 반영하여 주민들이 이를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가축사육제한지역 지정 및 변경·해제 절차 규정 신설(안 제2조)
- 나. 사육자의 의무 미이행시 조치기간 명확화(안 제6조제1항)
- 다. 개인정보보호에 따라 서식의 기재사항 보완(별지 제1호, 제2호서식)  
(주민등록번호 → 생년월일)
- 라. 개정에 따른 조문 번호 변경 반영(안 제1조, 안 제6조제2항)

## 3. 참고사항

### 가. 관계법령

- 1) 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조

###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### 다. 기 타

- 1) 신·구조문대비표 : 별첨
- 2)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: 별첨
- 3) 입법예고(2015.8.26. ~ 2015.9.15.)결과 제출된 의견 없음
- 4) 규제심사 : 규제 신설·폐지 없음
- 5) 부패영향평가 : 사육자 의무 미이행시 조치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안 제6조제1항에 반영하고 별지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수정 반영
- 6) 성별영향평가 : 원안 동의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조례 제 호

#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제8조제1항”을 “제8조”로 한다.

제2조 제목 “(사육제한 가축의 종류)”를 “(가축사육의 제한 등)”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“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”를 “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1호”로 하여 제1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하거나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그 지정을 변경·해제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과 그 지역의 경계에 있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,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친 후 구보 및 서대문구 홈페이지에 고시한다.

③ 제2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, 변경 또는 해제 사항을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.

- 1. 지정, 변경 또는 해제의 근거
- 2. 지정, 변경 또는 해제된 구역의 위치, 범위 및 면적
- 3.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축사의 이전, 그 밖에 위해(危害)제거 등 필요한 조치 명령
- 4.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보상절차
- 5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6조제1항 중 “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”을 “6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조치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조”를 “**법 제8조제3항**”로 한다.

별지 제1호서식, 별지 제2호서식 중 “주민등록번호”를 “**생년월일**”로 한다.

**부칙**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신 · 구조문대비표**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<b>제8조제1항</b>에 따라 가축의 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생활환경의 보전 및 구민 보건향상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<b>제8조</b> ----- ----- -----</p>
<p>제2조(<b>사육제한 가축의 종류</b>)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은 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<b>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</b>에 규정된 가축으로 한다. 다만, 애완 및 방범용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	<p>제2조(<b>가축사육의 제한 등</b>) ① ----- ----- (<b>이하 “법”이라 한다</b>) <b>제2조제1호</b>----- ----- -----</p>
<p><b>&lt;신 설&gt;</b></p>	<p>②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하거나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그 지정을 변경·해제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과 그 지역의 경계에 있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,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친 후 구보 및 서대문구 홈페이지에 고시한다.</p> <p>③ 제2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, 변경 또는 해제 사항을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지정, 변경 또는 해제의 근거</li> <li>2. 지정, 변경 또는 해제된 구역의 위치, 범위 및 면적</li> <li>3.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축사의 이전, 그 밖에 위해(危害)제거 등</li> </ol>

제6조(가축사육에 대한 감독) ① 제3조에 따라 사육허가를 받은 자가 제5조에 따른 사육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구청장은 **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고**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.

② 사육지의 주변여건이 현저히 변화되어 가축의 사육을 계속 존치함이 인근 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(危害)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청장은 허가취소 및 「**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**」 제8조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.

[별지 제1호서식]

가축사육(허가, 변경허가)신청서										처리기간 5일	
축주	주소									주민등록번호	
	성명										
사육장소제지		사육기간									
축사 및 사육 규모	구분 축종	축사			사육두수						
		부지면적	동수	건평	성축	자축	계				
「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」 제4조 제1항에 따라 가축의 사육허가(변경허가)를 신청합니다. 년 월 일 사육자 (서명 또는 인) <b>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귀하</b>											
구비서류		1. 사육지의 위치도 1부. 2. 축사의 시설평면도 1부.									

**필요한 조치 명령**  
**4.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보상절차**  
**5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**

제6조(가축사육에 대한 감독) ① ---  
 -----  
 -----  
 ----- **6개월** -----  
**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조치를** -----  
 -----  
 -----  
 -----  
 -----  
 -----  
 -----  
**법 제8조제3항** -----  
 -----

[별지 제1호서식]

가축사육(허가, 변경허가)신청서										처리기간 5일	
축주	주소									주민등록번호	
	성명									생년월일	
사육장소제지		사육기간									
축사 및 사육 규모	구분 축종	축사			사육두수						
		부지면적	동수	건평	성축	자축	계				
「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」 제4조 제1항에 따라 가축의 사육허가(변경허가)를 신청합니다. 년 월 일 사육자 (서명 또는 인) <b>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귀하</b>											
구비서류		1. 사육지의 위치도 1부. 2. 축사의 시설평면도 1부.									

[별지 제2호서식]

가축사육허가증						
제 호						
1. 성명			주민등록번호			
2. 사육장소제지 :						
3. 허가기간 :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						
4. 축사 및 가축사육 규모						
분	구	축사			사육두수	
		부지면적	동수	건평	성축	자축
축종						
「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」 제4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축사육을 허가합니다. 년 월 일 <b>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인</b>						

[별지 제2호서식]

가축사육허가증						
제 호						
1. 성명			생년월일			
2. 사육장소제지 :						
3. 허가기간 :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						
4. 축사 및 가축사육 규모						
분	구	축사			사육두수	
		부지면적	동수	건평	성축	자축
축종						
「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」 제4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축사육을 허가합니다. 년 월 일 <b>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인</b>						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해당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2조제2항제1호  
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,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-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절차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.

4. 작성자

- 일자리경제과 수의7급 조은정(330-1918)

□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

[시행 2015.3.25.] [법률 제12516호, 2014.3.24., 일부개정]

제8조(가축사육의 제한 등) ①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·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.

1.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
2. 「수도법」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, 「환경정책기본법」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
3. 「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, 「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, 「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, 「영산강·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·고시된 수변구역
4. 「환경정책기본법」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
5.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가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으로 지정·고시하도록 요청한 지역

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제7조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실태조사를 한 지역과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역 중 가축분뇨 등으로 인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의 보전에 위해(危害)가 발생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경우 해당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해당 지역을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으로 지정·고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.

③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·고시한 구역(이하 “가축사육 제한구역”이라 한다)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에게 축사의 이전, 그 밖에 위해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.

④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축사의 이전을 명할 때에는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어야 하며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이전에 따른 재정적 지원, 부지 알선 등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.

⑤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. 다만, 제1항제5호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의 경우에는 그 지정·고시를 요청한 환경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와의 협의하여야 한다.

[전문개정 2014.3.24.]